

아산 한신더휴 | 당첨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

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① 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신청자(세대주)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(주민등록등·초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)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	
	○		②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	
	○		③ 출입국사실증명서			
		○		④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○		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또는 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) 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	⑥ 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	⑦ 출입국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 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